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
		배포일시	2018. 6. 29(금) / 총 11매(본문4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항공정책과 안전정책과 감사담당관	담당자	과장 박명주, 사무관 좌명환(☎ 044-201-4219, 4223)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권미정(☎ 044-201-4204, 4181) 과장 정의현, 서기관 광영필(☎ 044-201-4244, 4245) 과장 김종학, 사무관 이정복(☎ 044-201-3110, 3102)
	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		과장 정창욱, 사무관 박민영(☎ 044-200-4842, 4850)
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		과장 최태호, 사무관 김경민(☎ 044-202-7526, 7528)
	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		과장 최경일, 사무관 임현규(☎ 044-202-3650, 3658)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

- ▶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
- ▶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여부 관련 법적 절차 개시
- ▶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철저 강화
- ▶ 항공사 ‘갑질’ 근절을 위한 ‘관계부처 종합대책’ 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“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(‘10.3~’16.3)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”고 밝혔습니다.
 - 지난 4.12일 조현민의 ‘물컵’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, 오히려 변경 면허(3회)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
 - 이에 국토부는 4.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습니다.
 - 법리 검토결과,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“면허를 취소해야 한다”는 의견과 “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”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.

- 우선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였고, 아래와 같이 조치 하였습니다.
 -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하였습니다.
 - '14.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하였고,
 -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'17.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하였습니다.
 -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었으며,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문서 통보(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) 하였습니다.
 -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('17.9)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고,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 임원은 수사의뢰('18.6.18) 하였습니다.
-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,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,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,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
 -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.

[항공사업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관련 절차]

구분	규정내용
항공사업법 제7조 제5항	국토교통부장관은.....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.
항공사업법 제74조	국토교통부장관은.....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	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②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청취 ③ 면허 취소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청취 결과를 자문회의에 제공

□ 그리고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<참고1>.

○ 첫째,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,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하여는 장비·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.

○ 둘째,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‘갑질’, ‘근로자 폭행’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(노선운항권) 배분시 불이익*을 주고, 슬롯(운항시간대)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* 운수권 배분규칙에 사회적 기여도(100점 만점에 5점) 반영 추진 중

○ 셋째,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하겠습니다.

①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(실.국장) 까지 상향하는 한편, 면허정보 상시 점검·파악을 위한 면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②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하고, 사실 조사 진행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6월 내 완료 목표로 하겠습니다.

③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(일반직 - 감독관)으로 전환하고, 선진국의 10~20%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여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(1→1.5→3년)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항공사의 '갑질' 근절을 위해 공정위, 복지부, 고용부 등과 함께 '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'을 추진하겠습니다<참고2>.

○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의 '불법·부당 거래'를 점검·조치하고, 복지부(국민연금)는 '스튜어디스 코드'를 도입(7월중)하여 기금운용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업·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편,

-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'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'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
○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'갑질·폭행'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·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

* (현행) 항공관련법으로 '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'은 등기임원 제한(3년)
(개선) 형법, 공정거래법,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추진(5년)

□ 국토부는 금번 대한항공·진에어 사태를 '환골탈태'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, 부주의,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'국민 눈높이'에 맞추어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는 한편,

○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(일반) 권미정 사무관(☎ 044-201-4181), (면허) 좌명환 사무관(☎ 044-201-4223),
(감사) 이정복 사무관(☎ 044-201-3102), (안전) 광영필 서기관(☎ 044-201-4245)
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항공사 관리·감독체계 강화 내용

- ① (일제 안전점검) 금번 항공사 ‘갑질논란’, 국내외 ‘안전사고’ 등과 관련하여 항공사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(6월)
 - (안전관리 강화) 안전관리 허술 회사에 대해 장비, 인력, 지표 등 분야별로 점검(연내)하고, 위반사항 발견시 과징금 부과 등 조치
- ② (운수권 배분 등의 공익성 강화) ‘갑질’ 등 사회적 논란 기업은 일정기간 운수권 등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추진
 - (운수권) 신규 항공시장 개척시 공익 기여도가 큰 회사에 우선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권 배분규칙*(국토부령)을 개정
 - (슬롯) 혼잡공항 운항 권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‘슬롯 배분’ 주체를 국토부 본부(현재 서울지방항공청)로 이관 추진
 - 대형 항공사가 선점한 슬롯을 자기 계열사에 교환 및 지원하는 사례를 엄격 관리하고, 슬롯 회수의 법적 근거*도 마련 추진
 - * (항공사업법) 슬롯의 배분·운영과 관련하여 슬롯의 배분주체 변경, 슬롯 회수에 대한 근거, 슬롯 교환시 사전인가제 등(박맹우 의원 발의, 4.19)
- ③ (면허관리 철저)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발생여부 등을 고위공무원(실국장) 책임하에 상시점검·관리토록 재정비
 - * (기존) 실무자 검토→ 과장 전결사항, (개선) 실무자→ 과장→ 실국장 전결
 - 모든 항공사에 대한 면허정보·변경이력 등을 상시적으로 파악·점검할 수 있는 면허관리시스템*을 구축하고, 투명하게 공개
 - * 항공사가 정보 입력 → 국토부 전담인력 상시 관리 → 일반현황과 면허발급 등 공개
- ④ (행정처분 기간 단축) 안전사고, 법령 위반사항 발생시 3개월 이내 사실조사하고, 행정처분까지 6개월 이내 완료* 목표로 추진
 - * 단,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개월 이내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장기간 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
 - 사실조사 진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조사 종료 후 즉시 행정처분*토록 추진
 - * 단, 사실관계 불명확 등의 경우는 검찰기소 또는 1심판결 후 처리

⑤ (항공안전감독 역량 강화) 선진국의 10~20% 수준*인 안전감독관 인력을 점차 확충**하고, 감독업무의 상호점검 체계도 강화

* 감독관 1인당 감독항공기: 주요 선진국은 1.5~3.5대 ↔ 한국은 17.5대

- 우선 기존 일반직 활용* 등을 통해 현행 1인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시 2인(일반직-감독관) 감독체제로 단계적 전환 추진

* 조종·정비 자격증 소지 일반직(현재 담당과에 10명)의 정책역량과 감독관의 현장 전문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고, 특정 항공사 봐주기 의혹 등 불식

⑥ (항공안전감독 투명성 제고) 감독관의 인력확충 추이 등을 감안하여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과 업무 제척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

- 특정 항공사에 편중(대한항공 79%, 복수경력 포함)된 감독관 비율을 자격요건 국제기준*과 후발항공사 성장추이를 고려 점진적 개선

* ICAO 안전감독관 기준 : 기장으로서는 5천 시간 이상 비행경력

※ 국제기준 준수는 ICAO 항공안전평가 등 국제사회의 우리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

- 항공사 출신 인적구성 비율의 다양성 확보 추이에 따라 이전 근무 항공사 관련 업무 제척기간도 단계적으로 확대(1→1.5→3년)

* 땅콩회항 후속대책('15.4)시 2년 제척 목표였으나, 인력부족으로 현재 1년 제척

※ [참고]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율

· 대한항공과 타사 경험 포함 : '14년 15명(88%) → '18년 19명(79%)

· 대한항공 단수 경력자 : '14년 8명(47%) → '18년 8명(33%)

☞ '15년 감독관 경력요건 완화(10년→5년) 및 외부 전문가(전원)를 통한 채용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,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음('14, 88% → '18, 79%, 약 9%p↓)

· ICAO 국제기준에서 정한 감독관 자격요건이 높아 상대적으로 역사와 규모가 큰 대한항공(49년) 출신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

* 항공사 역사 : 대한항공 49년, 아시아나 30년, 제주항공 13년, 티웨이 8년 등

참고 2

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(관계부처 합동)

◇ 금번 총수일가의 '갑질사태'를 계기로 항공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 마련·시행

① (경영체질 개선) 전체 항공사의 그룹 및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개선 추진

○ (공정위) 지주회사와 계열사, 계열사 간의 불법 또는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, 적발시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

- 항공사가 계열사 등과의 거래 관계에서 '일감 몰아주기' 등의 부당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

- 그룹 총수일가의 공정거래법령 위반사항이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서 확인시 형사고발 등 검토

○ (복지부) 국민연금은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후(7월 예정)에도 기업 주주가치 훼손이슈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주주권을 적극 행사

- 기금운용 위원회가 정한 원칙·기준에 따라 공개서한 발송, 경영진(이사회) 면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강구토록 요청

○ (국토부) 항공사 대표이사의 경력과 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점차 유도

- 기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여러 항공사의 대표를 겸직 또는 경영 간섭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추진

※ (유사사례) 방송법 제8조 대기업집단의 소유제한 및 상호 겸영 제한

② (근로환경 개선) 총수일가 및 경영자의 '갑질', '근로자 폭행' 등
위법·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 추진

- (고용부)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
기업의 '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*' 마련·시행('18.7월)

* (국조실 주관) 고용부, 문화부, 교육부, 인사처 합동으로 대책 수립

-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(~6월)하고, 온·오프라인
신고센터에 접수되는 '갑질사례'를 점검·조치
-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불합리한 근로
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진행

- (국토부) 항공사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, 총수일가의 '갑질·폭행'
근절 등을 위해 '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'는 항공사 등기임원*을
못하도록 항공법령을 정비 추진

* (현행) 항공관련법으로 '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'은 등기임원 제한(3년)
(개선) 형법,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추진(5년)

참고 3

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관련 Q&A

1

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지?

- 현재의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,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음
-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, 면허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

2

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지?

-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, 당사자 청문,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진에어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, 이해관계자·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임

3

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지?

-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
 -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, 이해관계자·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

4

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?

- 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등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려움
 -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의 위법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함

5

면허 취소 여부는 주로 어떤 사항이 검토되는지?

-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중요한 사항임
 - 다만,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청문 및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,
 -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대책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

6

일전에 한진가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, 국토부가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?

- 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 경력이 많은 법무법인(광장)에 우선 의뢰한 것이었음
 -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되어 자문에서 배제함
-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,
 - 소송 등으로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,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음

7

항공법령 정비 계획은?

- 「항공사업법」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,
 -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임

8

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지?

-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공정위, 복지부,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,
 -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음

9

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는가?

- 앞으로는 변경면허 심사 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,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음
- 아울러, 연내 「항공사업법」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음

10

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는지?

- '12년 이후의 항공사 전체의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,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었음
-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변경면허 심사 시 결격사유 유무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음